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

가정폭력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 가정폭력

39년간 가정폭력...집은 지옥이었고 우린 노예였다

父 '법정최고형' 가정폭력에 母 잃은 아들

가정폭력 '지옥의 20년' 증언... 딸은 눈물도 말랐다

가족이니까?

가족이어도 '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의 개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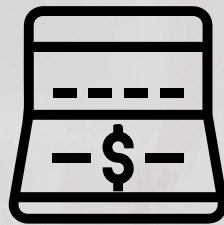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관련 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유형별 분석

01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지속적인 금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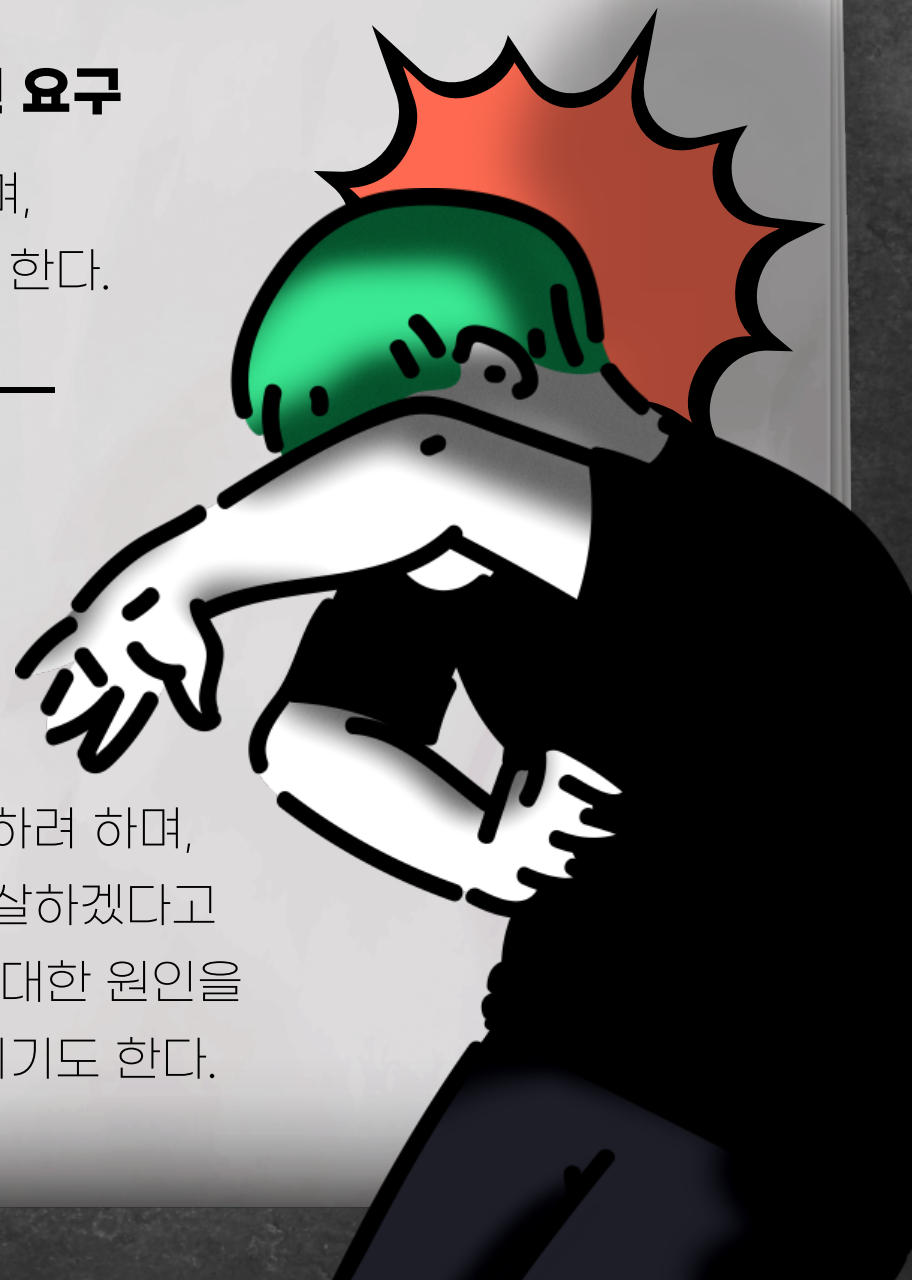
경제권을 가지고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는 경우이며,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있더라도 소득을 통제하기도 한다.

02 정서적 학대



폭언, 죄책감 유발, 행동 통제,
고립시키기, 조롱하기, 공포감 조성

폭력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하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하기도 한다.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행동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폭력에 대한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비난과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도 한다.



가정폭력 유형별 분석

가정폭력
발생시
112



03 육체적·성적 학대

물리적 폭력, 원하지 않는 성관계 강요,
낙태 강요



외도, 의처증·의부증도 성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고, 더욱 심각한 성적 학대는 나체 상태에서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04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
피해자 학대를 자녀에게 보여주기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정폭력의 자녀 이용 유형에 해당한다.

폭력은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작은 통제에서 큰 폭력으로

가정폭력은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쉽게 지나칠 만한
작은 통제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큰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단번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대비하세요



폭력의 흔적 남기기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 물리적 폭력의 경우 사진 찍어두기. 병원 진단서 확보.
- 행사한 날짜와 시간 등 사건 일지를 자세히 기록
- 문자, 메일, 대화 녹음 등 증거 확보 후 데이터 이메일로 옮겨 놓기



사전에 준비해두기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비상금 등을 미리 준비.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 정해두기.

Q & A

Q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A

상담지원 :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 “1366”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지원 가능

의료지원 :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해 가정폭력 관련 민사, 가사 사건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www.ki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544-7077, lawhome.or.kr

보호시설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 7일까지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 공간(그룹홈) 지원

주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함께 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나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이웃들에게 폭생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